

단과대학운영협의회 규정

제정 2020. 05. 0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운영의 구성원 대표성을 강화하고, 학칙 제2조 및 제61조의2에 명시된 단과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단과대학운영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건의할 수 있다.

1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
3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운영경비 및 등록금에 관한 사항
4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실험실습비 사용 방향에 관한 사항
5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교육공간 배정 및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
6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7. 단과대학 및 소속 학과·전공의 기자재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총장 또는 해당 단과대학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협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해당 단과대학장
2. 해당 단과대학 소속 학과(부)장
3.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
4.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추천하는 소속 단과대학 재학생 2인
5. 해당 단과대학장이 추천하는 동문·외부인사·본교 직원 중 2인(단과대학 사정에 따라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)

②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당연직 의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생긴 때에 임명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4조(의장 등) ① 협의회에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은 소속 단과대학장으로 하고, 회무를 통할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.

③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,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 의장은 제2조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제안이 있을 때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한다.

③ 협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협의회 안건 중 긴급한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 협의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협의 경과와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7조(경비지원) ① 협의회에 참석하는 의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총장은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간사) 협의회는 해당 단과대학 교학지원팀이 주관하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제9조(자료제출 의무) 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 및 학과(부)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각 부서 및 학과(부)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회의록 작성) 협의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 요지,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운영세칙) 의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20, 2020.05.08)

이 규정은 2020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.